

# 학사경고자 수강학점제한 및 학습교육지도에 관한 지침

제정 2013. 06. 05.

제6차 개정 2023. 08. 01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학칙 제42조(학사경고) 및 학칙시행세칙 제35조(수강학점제한)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5. 11. 11.)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학사경고를 1회 이상 받은 학생에게 적용한다. (개정 2015. 11. 11.) (개정 2020. 01. 15.)

1. (삭제 2015. 11. 11.)

2. (삭제 2015. 11. 11.)

**제3조(학사경고자 관리)** (신설 2020. 01. 15.)

① 매 학기 해당학과에서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수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개인별 상담을 진행하여야 하며, 학사경고 원인을 분석하여 적응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**교무연구처**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12. 30.) (개정 2023. 08. 01.)

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**상담팀**에서 진행하는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심리검사 중 1개 이상을 원칙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12. 30.) (개정 2023. 08. 01.)

**제4조(수강학점제한 적용 및 해제)**

①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의 경우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으로 제한한다. 단, **같이 자아찾기, 같이직업찾기, 같이능력찾기, 같이미래찾기** 학점은 제한학점 합산에서 제외한다. (항 신설 2015. 11. 11.) (개정 2020. 01. 15.) (개정 2023. 08. 01.)

② 학사경고를 2회 받은 학생이 수강신청 전에 **상담팀**에서 실시하는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심리검사 중 1개 이상을 이수한 경우 제1항의 수강학점제한을 해제한다. (항 신설 2015. 11. 11.) (개정 2020. 01. 15.) (개정 2023. 08. 01.)

1. (삭제 2020. 01. 15.)

2. (삭제 2020. 01. 15.)

③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학생이 수강신청 전에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담 이외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제1항의 수강학점제한을 해제한다.

**제5조(학습교육지도)** (삭제 2015. 11. 11.)

**제6조(수강학점제한 해제)** (삭제 2015. 11. 11.)

**제7조(기타)**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5. 11. 11.)

**부 칙**(학사관리부-379. 2013. 06. 05)

이 지침은 2013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부터 적용하며, 제3조(수강학점제한 적용)는

2012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학사관리부-863, 2015. 11. 11)

이 지침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학사관리부-551, 2017. 05. 22)

이 지침은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학사관리부-238, 2019. 03. 27)

이 지침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학사운영팀-24, 2020. 01. 15)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4조(수강학점제한 적용 및 해제)는 2020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자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학사지원팀-1198, 2020. 12. 30)

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학사지원팀-2850, 2023. 07. 25)

이 지침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